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89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한정애 · 조인철 · 박홍배
이개호 · 박상혁 · 유동수
윤후덕 · 박수현 · 정준호
박희승 · 강준현 · 고민정
김태년 · 최기상 · 추미애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각 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수출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변지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 기술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 보증 · 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통상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므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음. 주요국들은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구매자금융, 수출산업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반면, 수출 성과는 해당 수출기업만 향유하고 1~2차 공급업체 등 수출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금융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향후 수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출, 전략수출,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정책금융기관, 수출산업협력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수출금융을 통한 전략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의 조성, 관리·운용,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매자금 등 지원 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에 1천분의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의 경우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3조).

바.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14조).

사.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2. “전략수출”이란 제1호에 따른 수출로서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을 말한다.
3. “수출산업생태계”란 수출 산업을 구성하거나 공급망을 통해 연계되어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지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제11조제1항의 “구매자금융”이란 외국 발주자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보증, 보험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말

한다.

5. 제4호의 국내 정책금융기관이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6.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을 말한다.

제2장 전략수출금융기금

제3조(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

5.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7.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수출금융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2.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영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5.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2.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비용
3.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한

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 기금의 회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전략수출기금운용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5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기금이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으로 하며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제11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지원이 실제 집행된 시점마다 집행금액(단, 제3호의 경우에는 수출산업협력 지원 금액으로 본다)과 1천분의 10(단, 제3호는 1천분의 50으로 본다)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구매자금 융 지원
2.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낙찰조건부 지원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여금은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기여금과 별개로 부과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 그밖에 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여금의 납부 등) ① 제2조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금융지원 승인시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금융지원을 집행시 그 날 또는 금융지원의 집행 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기여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기여금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당 내역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유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의 유예나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부의무자가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

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기여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금의 수출금융지원계정에 귀속된다. 다만,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전입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기여금의 부과·징수·납부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5조의2에 따라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5조의2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한다

제15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금이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금에 대항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5조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이 법이 공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2026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④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⑧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납부받은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로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⑫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산입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⑥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과 제7항을 각각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로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⑦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

지원계정에 산입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⑱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별표]

정부납부기술료의 범위(제5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받은 기술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기술료
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로서 동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납부받은 기술료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된 기술료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기술료
16.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기술료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로서 동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된 기술료
18. 「농촌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료